

## 일본국 헌법이 생각하는 국제공헌에 대하여

법학관 헌법연구소장 이토 마코토

헌법 제9조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전쟁이 초래하는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발생시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제9조의 이념에 따라 '공격할 수 없는 나라'를 지향하며, 인류 공통의 염원인 진정한 국제평화를 실현하는 길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후에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 헌법의 입장입니다.

헌법은 전쟁과 내전의 원인이 되는 기아, 빈곤, 인권침해, 차별, 환경파괴 등을 없애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각국으로부터 신뢰받고, 공격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일본의 안전과 평화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자 최대의 국제 공헌이기도 합니다. 일본만이 평화롭기만 하면 된다는 '일국평화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를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국민은 ...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專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어떠한 명목의 전쟁에 대해서도 일절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선진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일본국 헌법은 전문에서 일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국민이 전쟁, 내전 등 무력행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어떠한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를 위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무력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지만, 일본국 헌법은 전쟁에 대한 참가를 반대하며, 위법한 무력행사라는 결과보다 오히려 그러한 무력행사가 발생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무력분쟁의 발생을 저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J.S.)